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57호
- 나.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찬성자 20명)
- 다. 발 의 일 : 2022년 9월 20일
- 라. 회 부 일 : 2022년 11월 25일

2.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을 규정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작물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등만을 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버스표판매대는 누락되어 있음
- 따라서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점용허가 시설인

버스표판매대를 추가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형평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버스표판매대를 추가함(안 제 10조제1항제6호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누락된 시설물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명시된 버스표판매대를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포함하되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해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한다.)</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나. 검토내용

(1) 관련법에서의 규정사항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등으로 명시되어 있음(붙임1.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 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 현행 조례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표판매대’가 누락되어 있음
-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은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로 규정하고 있으나¹⁾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버스표판매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2001년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 당시,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이를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가로판매대의 정의를 “신문·잡지류·음료 및 과자류 등의 판매”에서 “신문·잡지류·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음료·과자류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판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 ‘교통카드판매대’를 삭제한 바 있음

<p align="center">「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1.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03889호, 2001. 7. 16., 300201]</p>	<p align="center">「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11. 1.] [서울특별시조례 제4581호, 2007. 11. 1., 일부개정]</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라 함은 신문·잡지류·음료 및 과자류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라 함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교통카드판매대"라 함은 교통카드의 충전·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운영자"라 함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01) 2. "가로판매대"라 함은 신문·잡지류·음료·과자류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7.11.01) 3. "구두수선대"라 함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삭제 (2007.11.01.) 5. "도로"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운영자"라 함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 참고로 2000년 기준,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가로판매점 1,665개, 구두수선대 1,751개, 교통카드판매대 488개가 설치되

어 있었음

-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버스표판매대’ 및 ‘교통카드판매대’의 수요가 줄었고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교체·정비계획’(건설행정과-58150, 2000.7.1.)에 따르면 현행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 당시 조례시행 3년 후(2004.1.1이후)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10%, 교통카드판매대는 매년 20%씩 감축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보도상영업시설물 설치현황 (’00.07.01. ‘보도상영업시설물 교체·정비계획’ 중) >

구 분	계	가로판매점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수 량	3,904	1,665	1,751	488
소 유 권 자		자 치 구	운 영 자	운 영 자

보도상영업시설물 교체·정비계획(2000.7.1.)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예관한조례안 입법예고(2000.6.10)

조례시행 3년후(2004.1.1이후)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는 10%, 버스카드판매대는 매년 20%씩 감축정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은 ’22.10월 기준, 가로판매대 649개소, 구두수선대 854개소로 총 1,503개소가 있음(붙임3. 자치구별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 현행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에서 ‘가로판매대’의 정의에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추가하여 교통카드판매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 운영중인 가로판매대가 교통카드판매대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22. 10월 기준) >

구분	총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수 량	1,503	649	854

(2)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

- 시티투어버스의 운영현황 및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서울시 관광산업과에서 서울시티투어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운영기관 지원 및 관리, 버스노선 조성, 승차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티투어버스 사업자 선정 후 민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에서 한정면허 신청 및 교부를 통해 사업을 개시함

〈 시티투어버스 민간운영업체 현황('23.1월 기준) 〉

업체	노선		면허기간	
서울시티투어버스(주)	4개노선	도심고궁(TOUR1)	광화문~광화문	'23.1.2.~'29.1.1.
		파노라마(TOUR2)	광화문~광화문	
		강남순환(TOUR3)	강남역~강남역	
		야간(TOUR4)	광화문~광화문	
(주)노랑풍선시티투어	2개노선	한강잠실코스	DDP~DDP	'23.1.2.~'29.1.1.
		전통문화코스	DDP~DDP	

- ‘시티투어버스 신규노선 사업자 선정계획(관광사업과-4068, 2016.3.14.)’ 및 ‘시티투어모집공고문(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50호, 2016.3.24.)’에 따르면, 운영방식은 민간자율 경영으로 하고 시 재정 지원은 없으며 시티투어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추진하되, 다만 서울시가 발행하는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등을 비예산지원함
- 또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시설확보계획에 ‘운영사무실, 차고, 매표소, 차량확보계획’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시티투어버스 민간운영업체 선정시 매표소 설치 및 운영이 주요 과업내용으로 판단됨
-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티투어버스는 2개의 민간업체(서울시티투어버스, 노랑풍선시티버스)에서 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매표소

는 총 3개(중구 2개소, 강남구 1개소)가 운영 중임

- 중구에 위치한 광화문, DDP 시티투어버스 매표소의 경우, ‘「재미있는 서울(FUN, FUN한 SEOUL 100)」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사업 세부추진 계획(도시공간개선단-7342,2018.6.19.)’에 따라 시범대상 후보지에 선정되어 각각 1억 50백만 원씩 지원을 받아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및 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19.3월 착공일로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임
- 강남구와 중구에 위치한 매표소 3개소 모두 해당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사용료는 도로법 제68조제1호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되어 감면받고 있음

〈 서울시티투어버스 매표소 현황 〉

	명 칭	자치구	상 세 위 치	노 선	운수사
1	광화문	중 구	태평로1가 63-1	도심고궁,파노라마,야경	서울시티투어버스
2	강남역	강남구	역삼동 816-1.건물앞 (메가박스/스타벅스 앞)	강남순환,파노라마	서울시티투어버스
3	DDP	중 구	을지로6가 18-226	전통문화,한강잠실	노랑풍선시티버스



광화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DDP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 시티투어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에서 관리하고 연간 2,000만 명이 방문하는 서울 관광객들에게 교통과 관광 편의를 제공한

2)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또한 공공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버스표판매소’와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는 ‘교통카드판매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별시설물이 아닌 ‘가로판매대’로 통합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과 같이 새로운 역할을 하는 ‘버스표판매소’가 일부 신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이를 추가하여 공공시설물 간의 광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항의 ‘버스표판매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현행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1호에서 분류한 옥외광고물 중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³⁾’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도로점용이 가능한 ‘버스표판매소’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채 운영중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를 공공시설물로 규정하고 광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유사시설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한 버스표판매소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광고물등을 표시할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공공시설물인 시티투어버스 매표소를 추가하여 광고게재에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한다.)”를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나,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물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는 공익광고에 한정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광고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하는 공공시설물로 현행 조례 제1호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p> <p>2. ~ 5. (생략)</p> <p><u><신설></u></p> <p>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한다.)</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p> <p>2. ~ 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p>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도로점용이 가능한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추가지정하지 않고 감축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물등의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보행 및 보도환경을 위하여 기존운영자의 생존권 보장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특례지원(장애인·노숙인·의상자 등) 외에는 추가지정하고있지 않음.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9. 4. 30., 2021. 1. 5., 2021. 12. 14.>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22년 자치구별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단위: 개소, '22. 10월 기준)

연 번	자 치 구	총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계	1,503	649	854
1	종로구	105	57	48
2	중구	227	130	97
3	용산구	65	28	37
4	성동구	42	17	25
5	광진구	65	34	31
6	동대문구	76	39	37
7	중랑구	32	8	24
8	성북구	32	11	21
9	강북구	37	16	21
10	도봉구	28	9	19
11	노원구	62	37	25
12	은평구	42	22	20
13	서대문구	35	18	17
14	마포구	42	15	27
15	양천구	33	9	24
16	강서구	21	6	15
17	구로구	56	31	25
18	금천구	27	6	21
19	영등포구	86	31	55
20	동작구	27	11	16
21	관악구	46	20	26
22	서초구	97	28	69
23	강남구	117	27	90
24	송파구	53	25	28
25	강동구	50	14	36